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32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 박재호·박성민·오영환

이용빈 · 양정숙 · 위성곤

허 영·김정호·오영훈

정춘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행정조 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 의 의견을 정책 결정·자문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따라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이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을 저해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사람을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예산집행 내용"을 "위원 임명·위촉 현황, 예산집행 내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중복 위촉 관련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활동내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위원회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4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	
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	
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	
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
	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사람을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에서	<u>⑥</u> <u>제5항</u>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
역 통보 등) ① (생 략)	역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②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위원 임명·위촉 현황,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	예산집행 내용
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	
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	
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	
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